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https://www.xi.co.kr/iksan)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관람예약자 및 예약신청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하오니,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홈페이지(https://www.xi.co.kr/iksa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일반관람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자세한 서류제출 사항은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고객센터(**1833-4794**)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입장제한사항	-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고객센터(**1833-479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주요사항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1순위 자격부여**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익산시 고시 제2020-158호]	- 마동공원 민간특례 공원화사업. - 전세대 판상형 위주 구조 및 3면 발코니, 테라스 설계' 등. - 스카이라운지(38층), 게스트하우스(37층) 등 커뮤니티 시설.

■ 사업명: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 공급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산41번지 일원.

■ 공급대상: **총1,431세대** [전용면적 84㎡: 1,009세대, 91㎡: 137세대, 106㎡: 138세대, 122㎡: 140세대, 126㎡P: 5세대, 172㎡P: 2세대]

■ 입주시기: **2025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https://www.xi.co.kr/iksan) : **2021.12.17.(금) 예정(운영시간:10:00~17:00) ※내부사정으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검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만 해당)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기관추천,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1.12.17(금)	2021.12.27(월)	2021.12.28(화)	2021.12.29(수)	2022.01.04(화)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2022.01.12(수) ~ 2022.01.19(수)	2022.01.20(목) ~ 2022.01.27(목)
방법	분양홈페이지 등 게재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견본주택 방문접수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	견본주택 방문접수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
시간	-	09:00 ~ 17:30	09:00~17:30		-	10:00~17:00	10:00~17:00
장소	▪ 분양홈페이지 (https://xi.co.kr/iksan)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홈페이지(https://xi.co.kr/iksan)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 ※ 일반인 입장불가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https://xi.co.kr/iksan)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내 방문청약은 불가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17**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북도 익산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익산시 고시 제20202-158호)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전라북도 익산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긴하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제한(6개월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하는 세대원이 없는 경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나, 청약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

■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과거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자 신청자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부·모, 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전혼자녀 등 **※단, 재혼의 경우 그 배우자의 전혼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분양권등 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565호,2018.12.11])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예시)	처리결과	비고
특별공급 당첨(청약자) + 특별공급 당첨(세대원)	모두 부적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특별공급 당첨(청약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세대원)	특별공급 부적격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참여 불가	
특별공급 당첨(청약자) + 특별공급 신청 후 낙첨(세대원)	특별공급 당첨자 부적격(※세대원이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혼인신고일부터 시행일 이전(시행일:'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1.11.16 개정된 법령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전용 85㎡이하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20%, 민간택지는 10%)이 적용됩니다.

■ 2021.11.16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중 30%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청약자와 기존 공급방식(70%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포함하여 추첨 물량(30%)에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구분	추첨제(공급물량의 30%)		신청가능 주택형(타입)	비고
신혼부부	소득초과 + 부동산자산기준 충족(3.31억)	소득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초과) + 부동산자산기준 충족(3.31억)	84A.84B,84C	소득기준70%(기준/상위소득) 낙첨된 자와 포함하여 추첨.
생애최초	소득초과 + 부동산자산기준 충족(3.31억)	공급신청자가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한 자.	84A,84B,84C	
		*1인 가구 ①공급신청자가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주민등록표상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②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인 자.(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자)	-	

■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 2020.1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877」유권해석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 1호를 적용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2020.1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877」유권해석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5호·제9호 적용여부 판단기준이 "전체 면적·소형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소형저가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iksa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최하층이 3층인 주택형**도 있으므로 홈페이지(**https://xi.co.kr/iksan**)를 참조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10%)완납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및「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전라북도 익산시**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주택과 - 67672호 (2021.12.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산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3층 / 지상38층, 9개동 **총 1,4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845**세대,특별공급 **58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0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3**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00**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42**세대)
■ **입주시기: 2025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등	소계													
민영 주택	2021000956	01	**084.9797A**	84A	84.9797	26.7053	111.6850	49.1741	160.8591	**37.7773**	626	62	62	125	**62**	18	329	**297**	**12**	2025년 02월
		02	**084.7505B**	84B	84.7505	26.3675	111.1180	49.0415	160.1595	**37.6754**	233	23	24	46	**23**	7	123	**110**	**7**	
		03	**084.9132C**	84C	84.9132	26.5543	111.4675	49.1357	160.6032	**37.7477**	150	15	15	30	**15**	5	80	**70**	**4**	
		04	**091.7963**	91	91.7963	29.9208	121.7171	53.1187	174.8358	**40.8076**	137	-	14	-	**-**	4	18	**119**	4	
		05	**106.6773**	106	106.6773	32.1082	138.7855	61.7297	200.5152	**47.4228**	138	-	14	-	**-**	4	18	**120**	4	
		06	**122.5084**	122	122.5084	36.6787	159.1871	70.8904	230.0775	**54.4605**	140	-	14	-	**-**	4	18	**122**	**4**	
		07	**126.9471P**	126P	126.9471	46.0056	172.9527	73.4694	246.4221	**56.4337**	5	-	-	-	**-**	-	-	**5**	**-**	
		08	**172.7002P**	172P	172.7002	56.9792	229.6794	99.9345	329.6139	**76.7730**	2	-	-	-	**-**	-	-	**2**	-	
	합계										**1,431**	100	143	201	100	42	586	845	35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약식표기 (전용면적)	동별(라인별)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예정시기
									계약시	2022.07.15	2022.12.15	2023.05.15	2023.10.16	2024.03.15	2024.08.19	
84A (084.9797A)	101동(3호,5호) 102동(3호,5호) 103동(3호) 104동(3호,5호) 105동(3호,5호) 106동(3호,5호) 107동(3호,5호) 108동(1호,2호,3호,4호) 109동(3호,5호)	626	1층	10	93,977,250	281,022,750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2~3층	37	96,232,704	287,767,296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4~9층	114	98,488,158	294,511,842		393,0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10~19층	190	100,493,006	300,506,994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20~29층	181	102,247,248	305,752,752		408,0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30층 이상	94	104,001,490	310,998,51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84B (084.7505B)	101동(1호,2호) 102동(1호,2호) 103동(1호,2호,5호) 109동(1호,2호)	233	1층	7	94,227,856	281,772,144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2~3층	18	96,483,310	288,516,690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9층	54	98,738,764	295,261,236		394,0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10~19층	89	100,743,612	301,256,388		402,0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20~29층	58	102,497,854	306,502,146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30층 이상	7	104,502,702	312,497,298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84C (084.9132C)	**101동(4호)** **102동(4호)** 107동(4호) 109동(4호)	150	1층	3	93,225,432	278,774,568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2~3층	7	95,230,280	284,769,720		380,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4~9층	24	97,485,734	291,514,266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10~19층	40	99,490,582	297,509,418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20~29층	40	101,244,824	302,755,176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30층 이상	36	103,249,672	308,750,328		412,0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91 (091.7963)	**103동(4호)** 104동(4호) **105동(4호)** 106동(4호)	137	1층	3	95,585,350	285,831,500	28,583,150	410,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2~3층	8	97,916,700	292,803,000	29,280,300	420,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4~9층	24	100,014,915	299,077,350	29,907,735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0~19층	40	102,113,130	305,351,700	30,535,17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0~29층	37	103,978,210	310,928,900	31,092,89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30층 이상	25	105,843,290	316,506,100	31,650,61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06 (106.6773)	104동(2호) 105동(2호) 106동(2호) 107동(2호)	138	1층	2	109,107,180	326,266,200	32,626,620	468,0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40,400,000
			2~3층	8	111,671,665	333,934,850	33,393,485	479,0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4~9층	24	114,003,015	340,906,350	34,090,635	489,0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10~19층	40	116,334,365	347,877,850	34,787,785	499,0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49,700,000
			20~29층	40	118,665,715	354,849,350	35,484,935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30층 이상	24	120,763,930	361,123,700	36,112,370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122 (122.5084)	104동(1호) 105동(1호) 106동(1호) 107동(1호)	140	1층	4	125,193,495	374,369,550	37,436,955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2~3층	8	127,991,115	382,735,350	38,273,535	549,0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4~9층	24	130,788,735	391,101,150	39,110,115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10~19층	40	133,586,355	399,466,950	39,946,695	573,0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20~29층	40	136,150,840	407,135,600	40,713,560	584,0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30층 이상	24	138,482,190	414,107,100	41,410,710	594,0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126P (126.9471P)	104동(5호),105동(5호) 106동(5호),107동(5호) **109동(5호)**	5	최상층	5	205,158,800	613,492,000	61,349,200	880,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264,000,000
172P (172.7002P)	105동(1호) **106동(1호)**	2	최상층	2	272,884,517	816,014,075	81,601,408	1,170,500,000	117,050,000	117,050,000	117,050,000	117,050,000	117,050,000	117,050,000	117,050,000	351,15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중도금 납부 안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자납	중도금 대출(60%): 대출조건이 각 수분양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단, 126P,172P 타입은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입주지정일

※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797A	084.7505B	084.9132C	091.7963	106.6773	122.5084	126.9471P	172.7002P
약식표기	84A	84B	84C	91	106	122	126P	172P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함)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추가 선택품목 중 유상옵션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5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무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재당첨 제한되는 주택은 1순위 등**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무이자**)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방법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비고
■인터넷 청약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견본주택(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함) ※견본주택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	기관추천	①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생애최초·**노부모부양	인터넷 청약접수	-

※ 2018 .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본인만 신청가능)**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 세대)

구분		84A	84B	84C	91	106	122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5	5	4	-	-	-	24
	국가보훈대상자	12	5	2	-	-	-	19
	장기복무제대군인	5	2	1	-	-	-	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5	5	4	-	-	-	2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15	6	4	-	-	-	25
	소계	62	23	15	-	-	-	10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계	62	24	15	14	14	14	1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계	125	46	30	-	-	-	20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계	62	23	15	-	-	-	100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소계	18	7	5	4	4	4	42
합계		329	123	80	18	18	18	5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이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신청자격 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및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복당첨 처리방법

- 일반지역(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처리방법(배우자 세대분리 포함)

구분	중복유형		본인 + 본인	본인 + 세대원
당첨자발표일 같은 경우	같은 주택단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불가능한 사례(청약홈알림메세지) ※일반공급 + 일반공급 포함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 + 일반공급	특별공급 당첨인정 (일반공급무효)	모두 인정
	다른 주택단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알림메세지)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 + 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알림메세지)	둘 다 인정
		일반공급 + 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알림메세지)	
당첨자발표일 다른 경우	선당첨	후당첨	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특별(통장)=후당첨무효 특별(통장)+특별(미통장)= 후당첨 부적격	특별1회제한 (선당첨 인정,후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1순위=1순위무효 특별(미통장)+1순위=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일이 동일함.**

<table>
<tr><td>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td><td>•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td></tr>
<tr><td>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복당첨 처리기준</td><td>•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불가</td></tr>
<tr><td>유의사항</td><td>•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견본주택 접수를 우선시 함.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방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또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함.
<table>
<tr><th colspan="2">[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th></tr>
<tr><th>특별공급 대상</th><th>청약통장 구비여부</th></tr>
<tr><td>•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td><td>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td></tr>
<tr><td>•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td><td>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td></tr>
</table>
<table>
<tr><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tr>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북도 및 익산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밖의 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td></tr>
</table>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추천기관 ①장애인: **전라북도청 장애인복지과** ②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전북서부지방보훈지청 보상과** ③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④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이혼·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①임신의 경우: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함)**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단,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을 산정 함.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해당 지역**(전라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서울·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를 제외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외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및「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1순위	2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됨.**	• 무자녀 신혼부부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에 한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미성년자녀수 포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

구분	공급유형	소득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구분 (70%)	우선공급 (기준소득 :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 또는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되는 추첨제(30%) 공급물량에 기준소득 및 상위소득기준에 청약신청하여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기타 유의사항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기준 지역세대주 등으로 표기 및 전년도 소득이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으며 무직자인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현재 또는 작년 출산휴가를 받았을 경우: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제출 하여야함.
• 종교기관(교회,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단, 출산휴가 신청자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출산휴가기간 및 소득은 제외하며, 재직증명서 등 출산휴가 기간이 표시된 자료 등 회사직인이 날인된 서류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에 해당(제53조 9호는 제외)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단,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세대구성을 포함한(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는 전용 85㎡ 이하 신청가능.
④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신청한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구분(청약자 기준)	소득세 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②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배제함.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⑤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 자.([*표] 참조)**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가구원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세대구성을 포함한(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

구분	공급유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구분 (70%)	우선공급 (기준소득 :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 20%)	130%초과~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원) * (N-8), 100%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되는 추첨제(30%) 공급물량에 기준소득 및 상위소득기준에 청약신청하여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음)

※ 전용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단독세대 등)는 청약신청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소형·저가주택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표2]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는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이 청약이 가능함.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익산시 고시 제20202-158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전라북도	1순위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초과	추첨제 **100%**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중복당첨 처리방법

• 일반지역(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처리방법(배우자 세대분리 포함)

구분	중복유형		본인 + 본인	본인 + 세대원
당첨자발표일 같은 경우	같은 주택단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불가능한사례(청약홈알림메세지) ※일반공급 + 일반공급 포함	모두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 + 일반공급	특별공급당첨인정 (일반공급무효)	모두 인정
	다른 주택단지	특별공급 + 특별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알림메세지)	모두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 + 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알림메세지)	둘 다 인정
		일반공급 + 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알림메세지)	
당첨자발표일 다른 경우	**선당첨**	**후당첨**	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특별(통장)=후당첨무효 특별(통장)+특별(미통장)= 후당첨 부적격	특별1회제한 (선당첨 인정,후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1순위=1순위무효 특별(미통장)+1순위=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일이 동일함.**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비고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북도 및 익산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기타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표2]**가점 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표2]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30세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혼인적령 만18세)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공급신청자 청약가점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제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기존주택 및 분양권 등)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세대주)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3)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②**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④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⑤**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불가.** ⑥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4)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①**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②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③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 **④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③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기타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Ⅲ. 신청일정 및 방법,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 **2021.12.27(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인터넷 청약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견본주택(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함) **※견본주택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
일반공급	1순위	• **2021.12.28(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청약통장 은행 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2순위	• **2021.12.29(수)** 09:00~17:30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는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이 청약이 가능함.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익산시 고시 제20202-158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내 방문청약은 불가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함.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 (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서,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표3]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검수일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특별공급 확약서,인터넷 청약 동의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청약자(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신분증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O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청약자(본인)**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복무확인서	**청약자(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생업,학업 등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부동산 소유현황 등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O	부동산소유현황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소유에 따른 등기사항발급.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O	①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②재산세 과세내역서(건축물)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발급기관: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O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 발급기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O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축산업허가증 등 (부동산 자산 제외사항)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이면서,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 • 농업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발급기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②해당 농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축산업 ①축산업 허가증 ②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초지) – 발급기관: 토지e음(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 > 지번입력 >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③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O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자산 제외사항)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된 경우 등 제한을 받는 경우. ①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현장 사진 ③해당 토지이용계획 – 발급기관 : 토지e음(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 > 지번입력 >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 신규 분양권 등(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반자산가액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되지 않음.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O	재직증명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table>
<tr><td rowspan="2"></td><td></td><td></td><td></td><td></td><td>(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td></tr>
<tr><td>O</td><td></td><td>소득증빙 서류</td><td></td><td>•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td></tr>
<tr><td rowspan="11">생애최초
특별공급</td><td></td><td>O</td><td>비사업자 확인각서</td><td>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td><td>•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td></tr>
<tr><td>O</td><td></td><td>자격요건 확인서</td><td>청약자(본인)</td><td>•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내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견본주택 비치)</td></tr>
<tr><td>O</td><td></td><td>혼인관계증명서(상세)</td><td>청약자(본인)</td><td>•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td></tr>
<tr><td></td><td>O</td><td>혼인관계증명서(상세)</td><td>직계비속</td><td>•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td></tr>
<tr><td></td><td>O</td><td>가족관계증명서(상세)</td><td>피부양 직계존속</td><td>•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td></tr>
<tr><td rowspan="2"></td><td>O</td><td>주민등록표초본</td><td>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td><td>•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 포함여부 확인 필요시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td></tr>
<tr><td>O</td><td>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td><td>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td><td>• 입양의 경우</td></tr>
<tr><td></td><td>O</td><td>재직증명서</td><td rowspan="3">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td><td>•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td></tr>
<tr><td>O</td><td></td><td>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td><td>•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td></tr>
<tr><td>O</td><td></td><td>소득증빙 서류</td><td>•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table>
<tr><th>구분</th><th>서류구분</th><th>확인자격</th><th>비고(소득세납부 입증서류)</th></tr>
<tr><td rowspan="2">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td><td>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td><td>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td><td rowspan="2">※아래 [표2] 참고</td></tr>
<tr><td>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td><td>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td></tr>
</table>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td></tr>
<tr><td></td><td>O</td><td>비사업자 확인각서</td><td>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td><td>•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td></tr>
<tr><td rowspan="4">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td><td>O</td><td></td><td>주민등록표초본</td><td>피부양
직계존비속</td><td>•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td></tr>
<tr><td>O</td><td></td><td>가족관계증명서(상세)</td><td>피부양 직계존속</td><td>•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td></tr>
<tr><td></td><td>O</td><td>혼인관계증명서(상세)</td><td>청약자(본인) 및 직계비속</td><td>•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td></tr>
<tr><td>O</td><td></td><td>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td><td>피부양 직계존비속</td><td>•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td><td>O</td><td></td><td>위임장</td><td>청약자(본인)</td><td>•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td></tr>
<tr><td>O</td><td></td><td>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td><td>청약자(본인)</td><td>•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td></tr>
<tr><td>O</td><td></td><td>신분증 및 인장</td><td>대리인</td><td>•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td></tr>
</table>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② 무실적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③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납부내역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①홈택스→②신고/납부 → ③세금신고 → ④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해당연도 내 환급 받지 못한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 하시기 바람.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⑤ 납부내역증명**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⑤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등

■ 일정 및 계약장소

<table>
<tr><th>구 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h>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일(서류제출 방문 예약제)</th><th>계약체결(계약체결 방문예약제)</th></tr>
<tr><td>특별공급</td><td>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td><td rowspan="3">• 일시 : 2022.01.0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td><td rowspan="3">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제출방식</td><td>견본주택 방문 접수</td><td rowspan="5">※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td></tr>
<tr><td>대상</td><td>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td></tr>
<tr><td>서류제출 및 검수 일정</td><td>2022.01.12(수) ~ 2022.01.19(수),10:00~17:00</td></tr>
<tr><td>서류제출 및 검수 예약일정</td><td>2022.01.04(화) ~ 2022.01.11(화)
※검수기간 중 홈페이지(https://www.xi.co.kr/iksan)를 통한 지정예약.
※예약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장소</td><td>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td></tr>
</table>
• 각 공급유형별 당첨자는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구분</th><th>[표3] 특별공급 서류</th><th>계약체결 서류</th></tr>
<tr><td>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td><td>○</td><td>○</td></tr>
<tr><td>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td><td>-</td><td>○</td></tr>
</table>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당첨자 검수 기간 내 당첨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td><td rowspan="3">• 일시 : 2022.01.20(목) ~ 2022.01.27(목), 10:00~17:00
• 계약장소 : 견본주택(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
•계약방문 예약 : 2022.01.12(수) ~ 2022.01.19(수)
※계약기간 중 홈페이지(https://www.xi.co.kr/iksan)를 통한 방문일 지정예약.
•계약방문예약 접수: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홈페이지
(https://www.xi.co.kr/iksan)
※자세한 예약방법의 고지는 당첨자 발표후 개별안내예정임.</td></tr>
<tr><td>일반공급</td><td>1순위</td></tr>
<tr><td></td><td>2순위</td></tr>
<tr><td>예비입주자</td><td>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td><td colspan="2">※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https://www.xi.co.kr/iksan)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예약 방문접수 / 계약체결 방식 및 일정 등 추후 통보 예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당첨자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동규칙 제52조②(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시에 서류제출을 생략한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당첨자는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 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당첨자는**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할 수 없음.**
- **예비 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모든 제출서류를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우선시 하며,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사항 및 서류제출안내문(사업주체발송예정)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 하며,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체결 불가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기간 일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 일반예비입주자는 해당 계약서류를 등 **견본주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임.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임.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공급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1.04(화) ~ 2022.01.13(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1.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전라북도 거주신청자(익산시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보다 우선합니다.(익산시 고시 제20202-158호)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견본주택으로 접수를 우선시 함.** • **특별공급 신청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Ⅴ. 계약체결

■ 계약체결 서류(당첨자는 계약체결 서류를 구비하여 당첨자 검수일 내 견본주택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특별공급 예비입주자포함)은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 구비하여 접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각 은행별 모바일 입금내역을 캡쳐한 이미지 포함)
	O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계약자(본인)**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O	**서약서**	**계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가점제) 당첨자 서약서 작성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계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계약자(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계약자(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등본	**계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초본	**계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약자(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O	복무확인서	**계약자(본인)** (장기복무군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계약자(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계약자(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생업,학업 등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특별공급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O		**[표3]특별공급구비서류**	**계약자(본인)**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제출 시 구비서류 생략
일반공급 (일반예비입주자 포함)		O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분리세대)**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계약자(본인)** 및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재외국민 및 내국인 배우자 등)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 관련법령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국민은행	956801-00-014567	㈜한국토지신탁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공급계약 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중도금 대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임.(추후,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 **※126P,172P타입**은 중도금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무이자) 및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표준사업약정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함.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등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등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유의사항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자는 관련법령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단, 지정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1~ 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확인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5년 0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됨.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 (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7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부대 · 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GX룸,골프연습장,사우나 등),주민공동시설(소방안전체험관,작은 도서관, 독서실, 티카페,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등)

Ⅵ. 추가선택품목 계약(유상옵션) ※발코니 외 추가선택품목(가전, 가구 및 마감)의 계약일 및 납부계좌 안내 등 별도 안내

■ **정당계약일 내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추가선택품목 중 발코니 확장만 계약체결 예정임.**
■ **발코니 외**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1)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7.15	입주지정일
84A	21,100,000	2,110,000	2,110,000	16,880,000
84B	18,500,000	1,850,000	1,850,000	14,800,000
84C	18,800,000	1,880,000	1,880,000	15,040,000
91	25,100,000	2,510,000	2,510,000	20,080,000
106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122	31,000,000	3,100,000	3,100,000	24,800,000
126P	32,800,000	3,280,000	3,280,000	26,240,000
172P	40,400,000	4,040,000	4,040,000	32,320,000

(2)발코니확장 비용 납부 계좌(계약금)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비용 납부계좌(계약금)	국민은행	956801-00-014570	㈜한국토지신탁

- 발코니확장 비용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람.(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공급계약 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가전, 가구 및 마감 등)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1)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84A,B,C 91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4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4,61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6,150,000	
91	선택4	5대	거실, 침실1, 침실3개소	7,250,000	
106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4,61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6,15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7,25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3개소	8,600,000	
122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7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6,16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7,51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3개소	8,610,000	
126P	선택1	4대	거실, 주방, 침실1, 가족실	6,17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가족실, 침실1개소	7,520,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 가족실, 침실2개소	8,620,000	
172P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7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6,170,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가족실, 침실3	9,230,000	
	선택4	7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가족실, 침실3, 침실4	10,330,000	
	선택5	8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가족실, 침실3, 침실4, 침실5	11,50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2)천장형 환기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전타입	1대	선택1	침실1	875,000	자이에스앤디㈜
	2대	선택2	침실1, 침실2 또는 침실3 중 선택 1	1,750,000	
	3대	선택3	침실1, 침실2, 침실3	2,625,000	
126P	1대	선택1	침실3(하부층)	875,000	
	3대	선택2	가족실(상부층), 침실1(상부층), 침실2(상부층)	2,625,000	
	4대	선택3	침실3(하부층), 가족실(상부층), 침실1(상부층), 침실2(상부층)	3,500,000	
172P	1대	선택1	침실1	875,000	
	2대	선택2	침실1 +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가족실 중 선택 1	1,750,000	
	3대	선택3	침실1 +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가족실 중 선택 2	2,625,000	
	4대	선택4	침실1 +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가족실 중 선택 3	3,500,000	
	5대	선택5	침실1 +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가족실 중 선택 4	4,375,000	
	6대	선택6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가족실	5,250,000	

- 시스클라인 기본 2대(거실 및 주방)가 제공됨.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음.

(3)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S711SI24B	5,750,000	홈바형
		S691SI34BS2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
식기세척기		DUB22SB2	1,100,000	-
쿡탑		BEI3GTBI	1,220,000	인덕션3구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구성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추가선택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빌트인 가전제품 선택에 따라 가구의 깊이, 몰딩(훼샤) 등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가구 및 마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세부항목	84A	84B	84C	91	106	122	126P	172P
마감특화	복도/거실/주방/팬트리 바닥	포세린 타일	1,340,000	1,280,000	1,350,000	1,460,000	1,440,000	1,680,000	1,490,000	2,840,000
	현관 중문	3연동 자동문(LX 하우시스)	2,020,000	2,020,000	2,020,000	2,020,000	2,020,000	2,020,000	2,020,000	2,160,000
	침실조명	특화조명(침실)	1,120,000	1,460,000 (※ 주방특화 선택시 1,120,000)	1,120,000	1,460,000 (※침실2,3 통합시 1,120,000)	1,460,000	1,460,000	1,290,000	2,540,000
주방특화	주방	오픈형 주방 등	5,550,000	5,010,000	5,140,000	5,270,000	5,380,000	6,300,000	6,450,000	6,800,000
공간특화	-	팬트리, 베타룸, 드레스룸 등	-	-	-	2,140,000	-	3,120,000	-	3,120,000

- 상기 추가선택품목(가구 및 마감)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전 위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가전 및 가구 및 마감 등)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정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 가능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 품목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됨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형태가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됨.(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가전,가구 및 마감)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름.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설치비용이 포함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은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타입별, 발코니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됨),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고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기본형)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기본형(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외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외부창호의 사이즈, 개소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Ⅷ. 기타

▣ **유의사항(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공통	일반사항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사업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 지하관로를 통한 소음, 폐기물의 냄새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이전 배포된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APT 및 주택단지,주변상가,공공청사(주민센터,파출소등),종교시설(교회 등),학교,공원,정류장,단지외부도로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부대편의시설,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기본제공,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관련 법령에서 허용범위 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심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제반사항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크기, 높이 등에 따라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사 또는 본 단지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단치배치도,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시점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 지침에 따라 일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UB XIAN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청약당첨, 입주관리등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후 계약을 해제하는경우분양계약서에서규정한위약금을공제합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부동산중개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소음,조망,일조,진입로)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칸막이제거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반경기준,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하며, 개별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아파트)의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문화재 발견,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1년 11월 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8월 11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및도로 단지주변현황	본 사업지 북측에는 선화1로 28m도로, 서측에는 고봉로 25m도로, 남측에는 13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개발주체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홍보물의 내용 중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마동공원, 공원조성계획)현황 등 개발 계획은 관련 고시 및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 상세내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도(지도 등)는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예정 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익산시 고시 제2021-143호)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경계에는 옹벽,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생울타리,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계 주변 및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 휀스, 중앙 분리대, 차량 차단봉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실제 현황과 CG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변 공원계획, 경관녹지(기부채납), 원형지보존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지적 측량결과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녹지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및 심의 등에 따라 설치되는 단지주변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설치 등을 당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내 장애자램프 시설은 선형변경 및 위치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원형지 보존지와 25m도로 사이에는 레벨차이로 인하여 조경석/산석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 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지 주변 마동공원 내 공원시설(계획)에는 도로 및 가온마당 등 기반시설, 문학정원 등 조경시설, 열림쉼터 등 휴양시설, 열림놀이터 등 유희시설,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관리사무소등관리시설,기타사찰(연국사),전통문화체험관 등 시설이 있으며,공원조성시설물과 외부통행 등 소음,진동,냄새 등 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이리초교, 지원중학교, 전북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가온마당 등 공원조성계획 시설물, 테니스장, 이리신광교회, 연국사, 마동성당 등 종교기관, 솜리문화예술회관 등 기반시설 등 위치로 인한 교내방송, 타종 및 각종 소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단지 기준 약 600m 이격된 위치에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국가혁신산업단지),제2일반산업단지는「악취방비법」규정에 따라 2014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을 상시 유발하는 섬유업체, 사료제조업체 등과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위치, 모양, 크기, 형태,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소음,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아파트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무관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도로면적(보도 포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관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은 이리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나, 주변 학급단 인원 및 인근 학교수용률에 따라 학교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익산중학군(공동학구)으로 지역 내 학생의 지망 학교 순위에 따라 학생을 배정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입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평준화 지역이 학생의 지망 순위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과는 달리,비평준화 지역의 고입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합니다.따라서,비평준화 지역의 고입전형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비상차 및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4동 서측(수경시설 주변)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가 설치되는 곳에는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5동 저층세대(84㎡A,106㎡,122㎡)는 맞은편 경관녹지 옹벽설치로 인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05, 106, 107 ,108동의 세대 전후면, 측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1,102,103,106,107동 인근에는 외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승강기)이 설치되고, 101,102,103,104,106,107동 인근에는 외부계단이 설치됩니다.
		103동에는 스카이라운지 전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대수 및 속도, 인승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1동의 북측에 위치한 단지밖 부지에는 당사업과 무관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고 세부형태나 높이는 해당시점의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는 각 동의 필로티 하부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동의 필로티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디자인,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난간대 고정 위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사업부지단차구간에조경석쌓기또는옹벽이설치될수있으며추후인허가조건,미관,구조물안전성등을고려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구조체는정밀구조계산에따라최적화될수있으며,이에따라내력벽은비내력벽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기초형식은터파기결과에따라지내력기초또는파일기초로변경될수있습니다.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7동, 109동 옥상층 및 106동 지하1,2층 PIT, 108동 지하3층 PIT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본 아파트의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차량출입구는 단지 북측 및 서측, 남측에 3개소 설치되며 인접한 동에는(102동, 103동, 104동, 105동,109동 저층부 세대) 차량 진출입용 도로와 램프가 인접하여 있어 소음,차량불빛 및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행자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설치되며 인접한 동에는(101동, 102동. 107동 저층부 세대) 보행자 출입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북측 및 남측 차량진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측 차량출입구 지하2층 주차장 102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측 출입구 일부(지하2층 주차장 102동 인근)에는 이동식 볼라드(탈착형)이 설치되어 출입이 제한되며, 임시 차량통행에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출입 시 입주자 및 방문자의 차량출입을 위한 차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자의 출입 시 차량출입을 위해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차량 출차 알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옆 쓰레기분리수거함은 사용상 상가용으로 계획하였고 대지지분과의 관계는 별개 사항입니다.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 DA, 실외기, 천창, 등 기타 구조물과 시설물로 인하여 소음, 악취, 조망 등 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소방매트자리 등의 설치요청에 따라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이삿짐)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보도)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보도)의 입부구간은 쓰레기재활용수거차량, 우편물, 택배차량 및 이사차량의 이동 및 정차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기 차량의 접근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외의 입주민 개인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외관계획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01, 102, 103, 109동의 상층 단차부 코어벽 일부구간은 금속시트 및 LED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에서 빛조명, 소음에 의한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부동의 옥상장식물과 경관조명에 따라 조망에 간섭, 일조권 침해가 있을수 있으며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 타일, 벽돌, 석재뿜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용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클럽, G.X, 골프연습장, 로비라운지,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소방안전체험관 등) 및 부속시설 (아너스클럽, 어린이집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은 건축심의시 소방서 조건 사항으로 소방 안전교육 및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사이즈, 창호 높이,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 모형, CG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층 및 1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3동에는 스카이라운지 전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대수 및 속도, 인승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2,166대, 근린생활시설 44대, 총 2,210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5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2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3층 주차장은 105,106동에서는 직접 출입이 불가하고, 지하1층 주차장은 101,102,103,108,109동에서는 직접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북측 차량진출입구 지하2층 주차장 102동 인근이며, 이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출입 시 차량출입을 위해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주차장 및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냄새,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의 도로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용 도로입니다.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이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유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있고,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2동 인근에 설치 예정이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및 인·허가 과정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북측 차량진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북측 차량진출입구 지하2층 주차장 102동 인근이며, 이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출입 시 차량출입을 위해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주차장 및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냄새,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172㎡P 타입의 천장 높이는 2,600mm으로 시공됩니다.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세대내 비내력 벽체는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적 / 골조 / 경량벽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벽에 공사용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126㎡P 타입과 172㎡P 타입의 옥외공간에 면하는 외창창호 사이즈, 높이 및 턱 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122㎡, 126㎡P, 172㎡P 타입 욕실내 외창(고정창 및 프로젝트창)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관련 도면은 오류, 오기 수정 등으로 설계의 경미한 변경(관련 법령에서 허용범위 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각 동별 계단실의 프로젝트 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층에서는 고정창, 일부 층에서는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창 사이즈는 층별, 동별 다를 수 있습니다.
		84㎡A, 91㎡, 106㎡, 122㎡, 126㎡P 타입 주방 외부창호에는 투시형 철제 난간대가 설치되며,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연도와 가까운 창호의 1면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고정창일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외창이 작고, 한면이 고정창일 경우 창호 열림을 위해 스토퍼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1㎡ 타입 다용도실 창호는 다른 타입보다 사이즈가 작으며, 창호가 적게 열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의 스토퍼는 한면이 고정창일 경우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126㎡P, 172㎡P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 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6㎡P, 172㎡P 타입은 옥외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타입 옥외공간 외곽에는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난간대 고정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옥외공간 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난간대 고정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옥외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픈발코니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난간대 고정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오픈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방 특화(독립형 후드)선택시에는 인덕션, 하일라이트 등 전기쿡탑 적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욕실도어에손끼임방지장치가제공됩니다.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스타일업(유상옵션) 선택시 가구 하드웨어(힌지, 쇼바, 플랩 등) 및 악세사리류(수저서랍함, 코너선반 등)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기본제공되는 주방가구는 견본주택내 기본제공형 주방가구 부스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타일옵션 및 스타일업옵션(유상)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인식주방TV(13.3인치) 선택 시 기본 제공품목인 주방TV(10인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계설비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알파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월패드 및 음성인식주방TV(유상옵션))은 거리・음성엔진 인식범위・주변소음・전파방해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대 완강기 설치 계획은 없으며,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설치는 제외됩니다.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의 84㎡A의 침실은 표준화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미건립 84㎡B,C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 미건립 106㎡타입은 91㎡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84㎡A, 91㎡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라이트스타일로, 122㎡타입은 미디엄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 조명이 설치됩니다.
		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VR동영상 및 유튜브 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혼합되어 시공되어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사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84㎡A, 91㎡, 122㎡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세대 현관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경 외부공간 모형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식재,시설물의 위치 및 포장마감, 포장패턴, 난간대 높이, 디테일, 석재나누기, 사이즈 등)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를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5,198,600,000원	
소방,통신감리	㈜이린	668,800,000원	
전기감리	유원이앤에프(주)	827,310,369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	㈜한국토지신탁	㈜마동공원개발	지에스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7(역삼동)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7길 43, 2층(인화동2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214911-0058795	110111-0002694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435,290,800,000원	제 01282021-101-0018000 호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구분	등급	비고
내진능력(MMI 등급)	Ⅶ - 0.197g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Ⅰ~Ⅶ)으로 표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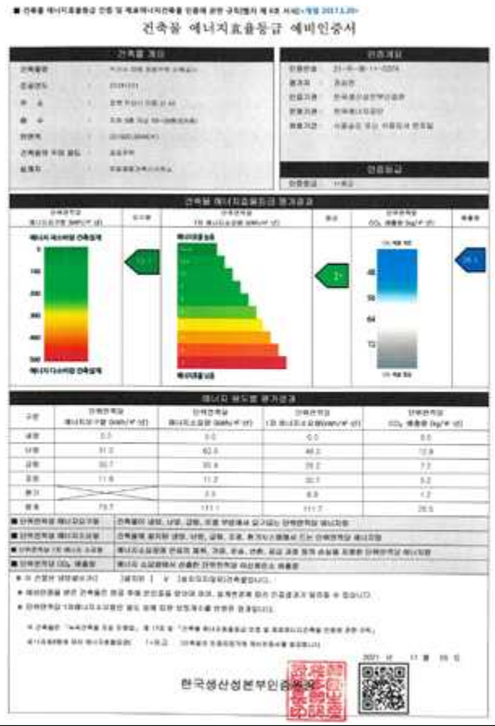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의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사항은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본사업은 시행자인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이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관리입금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및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인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및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 개별분양 세대(호실)에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또는 매매계약)상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승계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함.

•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과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담보책임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본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매각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약정상 대출금, 제1순위 내지 제2순위 우선수익자 지급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분양대상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또는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함.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2021.12.17(금) GRAND OPEN(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입주자모집공고: 2021.12.17(금) **특별공급:** 2021.12.27(월) **1순위:** 2021.12.28(화) **2순위:** 2021.12.29(수) **당첨자 발표일:** 2022.01.04(화)

총 1,431세대 | 전용 84㎡A, 84㎡B, 84㎡C, 91㎡, 106㎡ 122㎡, 126㎡P, 172㎡P |

분양문의 1833-4794 **사이버 견본주택:** https://xi.co.kr/iksan **견본주택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5